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45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07. 04. 고성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23. 07. 05.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3. 07. 12. 산업경제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개정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3. 5. 16.)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특별회계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존속기한 삭제(안 제4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지방재정법」 제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1)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22565(2023.6.8.)]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926호

가) 예고기간: 2023. 5. 30. ~ 2023. 6. 19.(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개정 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3. 5. 16. 시행)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되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안 제4조의2 (존속기한)	· 5년으로 명시된 존속기한 ('19 ~ '23년말) 삭제	· 적정(지방재정법 제9조 단서조항)

참고 1]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7. 12. 원안가결 함.